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5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병진・임미애・권칠승

송옥주・박 정・김한규

윤후덕 · 정성호 · 소병훈

이훈기 • 노종면 • 이워택

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 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 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 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 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 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 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 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1. ~ 4. (생략)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u>2029년 12월 31일</u>
,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u>2029년 12월 31일</u>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 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 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 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 ·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 2. (생략)

② (생 략)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저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2029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기금	법」	제2	24조의	의5여	l) t	다른	노
후생	활인	난정자	금을	지	원병	받기	위
하여	담	보로	제공	된	농?	지에	대
해서	는	다음	각	호.	의	구분	느에
따라	재	산세	를 <u>20</u>)24 է	<u>크</u>]	[2월	31
<u>일</u> 까	기	감면	한다.				

1. • 2. (생략)

<u>2029년 12월 31</u>
<u>일</u>
1.•2. (현행과 같음)